

溪堂 柳嘯陸의 禮學思想

도민재*

차례

1. 머리말
2. 계당의 學統과 학문정신
3. 『全禮類輯』의 구성과 내용
4. 계당의 禮說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嶺南學派의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인, 溪堂 柳嘯陸(1813~1872)의 禮學思想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계당 류주목의 학문은 '博文約禮'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계당은 '敬'을 학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경 공부는 『小學』의 실천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소학』을 중시하였다.

계당은 조선조의 예설을 망라한 예서인 『全禮類輯』을 편집하였는데, 이는 學派와 黨色을 구분하지 않고 조선조 예학자들의 예설을 망라하여 정리한 책이다. 계당은 이에서 자신의 예설이나 견해를 덧붙이지 않고 다양한 예설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하여, 조선조 예설의 흐름과 견해의 차이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설의 전개에서 계당은 『家禮』 및 주자의 예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古禮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고례에 明文이 없을 경우에도 臆

* 영산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見으로 의례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의례의 시행과정에서 가급적 고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예법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례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는 先儒들의 설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특히 退溪의 예설을 주로 따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禮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人情을 따라 예를 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계당의 예학사상은, 고례와 『가례』를 위주로 하면서도 儀禮의 행례과정에서 예의 본원적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에 따라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례의 실천을 추구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溪堂 柳淸睦, 禮學思想, 『全禮類輯』, 博文約禮, 古禮, 人情

1. 머리말

유학의 禮治主義 확립을 추구했던 조선 왕조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 체제의 정비와 통치이념의 확립을 목적으로 유교적 禮制가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다. 16세기 이후 국가의 체제가 완비되고 士林들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사람들은 성리학적 사고에 입각한 儒教儀禮의 사회적 보급에 힘을 기울여 왔다. 16세기에 이루어진 性理學의 이론적 발달은 성리학의 이론을 현실에 실천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禮學의 발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17세기에는 ‘예학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곧 유교적 예제가 조선 사회에 뿌리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예학에 대한 논의는 학파간의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면서, ‘禮訟’으로 비화되어 黨爭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로써 학파간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어 갔다.

19세기에 들어서는 勢道政治가 이어지면서 대내적으로는 三政의 紊亂 등

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렸으며, 대외적으로는 丙寅洋擾(1866년)와 辛未洋擾(1871년) 등 서구 열강들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조선사회는 衛正斥邪를 주장하는 쇄국론과 서구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는 개화론이 대립하며 더욱 혼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조선사회를 이끌어 왔던 예치주의의 이념도 도전을 받던 상황에 처해 있었다.

溪堂 柳疇睦(1813~1872)은 이러한 19세기에 살았던 嶺南學派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계당은 일생동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진력하였는데, 계당의 학문적 경향은 學派나 黨色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은 학문 태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계당의 학문사상 중에서 禮學思想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선조 예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6~17세기 학자들의 예설과 18세기의 예송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세기의 예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계당의 예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예학사상의 경향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계당의 學統과 학문정신

류주목의 字는 叔斌이며, 號는 溪堂이다. 本貫은 豊山으로, 西厓 柳成龍(1542~1607)의 9世孫이 된다. 그의 祖父는 江阜 柳尋春(1762~1834)이며, 부친인 洛坡 柳厚祚는 左議政을 지냈다. 계당은 일찍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 연구에 침잠하였으며, 중년 이후인 1867년 童蒙教官에, 1868년에는 掌樂院主簿·公忠道都事 등에 除授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진력하였다.

계당의 학문은 그의 家學 연원에서 비롯한다. 계당의 9대조인 서애 류성

룡의 셋째 아들인 修巖 柳軫(1582~1635)은 안동의 하회로부터 尙州로 移居하여, 愚伏 鄭經世(1563~1633)를 좇아 학문을 하였는데, 우복은 서애의 학문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수암의 학문은 無忝齋 鄭道應(1618~1667)과 南野 朴孫慶(1713~1782)을 거쳐 立齋 鄭宗魯(1738~1816)에게 이어지고, 다시 계당의 조부인 강고를 거쳐 계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계당은 퇴계학과 중에서 서애학통의 학문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계당은 어려서부터 조부인 강고에게 수업하여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게 된다. 계당은 15세에 이미 經史子集에 널리 통하였으며, 문장에서도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한다. 이에 조부인 강고는 계당에게 史才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모름지기 眞實切近함을 좇아서 공부를 할 것이고, 한갓 泛博함을 따르는 것은 무익하다”고 경계하는 가르침을 주었고, 이로부터 爲己之學에 주력하여 聖賢의 글을 講明하고 실천하는 데 힘썼다고 한다.¹⁾ 이에서 계당의 학문정신이 ‘博文約禮’에 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당의 학문세계는 그의 3대 저술인, 『四七論辨』과 『朝莖約全』, 『全禮類集』을 통해 조망해 볼 수 있다.

『사칠논변』은 조선조 성리학의 대표적인 논변인 ‘四端七情論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사단칠정’에 관한 조선조 학자들의 이론을, 退溪와 高峯의 往復書翰 이후로 葛庵, 拙修齋, 愚潭, 息山, 大山 등 嶺南學派 학자들의 이론은 물론, 栗谷, 澤堂, 炭翁, 同春堂, 白湖 등 畿湖學派 학자들의 이론을 모두 취합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처럼 조선조의 성리학의 대표적 논변인 사단칠정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망라하여 정리해 놓으면서도, 계당 자신의 견해는 전혀 덧붙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사단칠정에 관한 이론을 체

1) 『溪堂先生文集』, 附錄, 권1, 「行狀」(柳道洙 撰), “年十五, 六經史子集, 無不淹貫, 曉解至論, 文章軌範, 歷代沿革, 姓譜來歷, 如撥火爲文, 力量宏潤, 問架嚴密. 江臯先生許其有史才, 而因警誨之曰, 須從眞實切近用工, 徒泛博無益. 自是知有爲己之學, 而求之就聖賢書, 益講明體履.”

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야약전』은 조선조 黨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책이다. 이는 당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당쟁의 자료를 시대별로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 역시 黨色에 치우치지 않고 당쟁과 관련한 사료들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당쟁을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전례류집』은 邦國禮와 家禮에 대한 古今의 학자들의 禮說을 모아 편찬한 禮書이다. 이 또한 학파의 구별을 두지 않고 조선조의 예설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있어서, 조선조의 예학을 集大成해 놓은 책이라 하겠다.

계당은 이처럼 性理學과 政治, 예설에 대한 자료를 學派나 黨派를 구별하지 않고 집대성해 놓음으로써, 후학자들에게 조선조의 사상 전반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러한 작업은 곧 ‘박문약례’에 기초한 계당의 학문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계당은 ‘敬’을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體가 된다고 보았다.

敬은 바로 학자들에게 最上의 공부이다. 안으로는 意志와 생각이, 밖으로는 衣冠·容貌·言語·動作에서 祖上·父母·君師·聖賢·夫婦·兄長·朋友·宗族·賓客 등에 이르기까지의 허다한 大事가 모두 主一無適의 공부로써 만 가지 변화에 응하고 萬變을 살피는 마음이니, 일과 처함에 따라서 이것이 있지 않은 바가 없어야 한다.²⁾

경 공부야말로 학자들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하였다. ‘主一無適’을 중심으로 하는 경 공부는 안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개인의 行動舉止와 인간관계에서의 마땅함을 추구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 공부는 실천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2) 『溪堂先生文集』, 권5, 書, 「答張子順」, “敬是學者最上項工夫, 內之志意思慮, 外之衣冠容貌言語動作, 以至於祖先父母君師聖賢夫婦兄長朋友宗族賓客, 許大大事, 以主一無適之工, 應萬變是監之心, 當事隨處, 無所不在.”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계당은 『小學』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대개 선비가 五倫을 밝히고 百行을 돈독하게 하는 데는, 『小學』만한 것이 없다. 『소학』을 익히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소학』을 읽지 않으면 『대학』을 읽을 수가 없다. 집안에 처하여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밖에 나와서 스승을 높이고 벗들과 친하게 지내며, 朝廷에 서서 임금을 바르게 보좌하고 백성들에게 恩惠를 베푸는 데 이르기까지가 모두 이것에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儒生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여 읽은 지 여러 해가 지나고 이미 성장하여서 다시 이에 從事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읽지 않은 것과 같으니 다시 머리를 돌려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고 일에 대해 토론해야 할 것이다.³⁾

『소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할 것이며, 이미 『소학』을 배우고 장성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소학』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게 되므로, 다시 『소학』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소학』이 어릴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이후에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계당의 학문정신은 敬에 기반을 두고, 이를 현실에서 항상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정신으로 전개되고 있다.

3. 『全禮類輯』의 구성과 내용

계당의 3대 저술 가운데 『전례류집』은 ‘家禮’뿐 아니라 ‘邦國禮’까지를 포

3) 『溪堂先生文集』, 권11, 雜著, 「溪亭講會節目」, “蓋士之明五倫敦百行, 莫如小學, 不習小學, 不可以做人, 不讀小學, 不可以讀大學, 處於家而愛親敬長, 就於外而隆師親友, 以至於立於朝而致君澤民, 皆由這裏出來, 則儒生之蒙學, 讀過年, 既長成, 不復從事, 有若初不經覽者, 可以更轉頭作補足工夫, 故今以是書, 首先讀討事.”

함하여 조선조의 예설을 망라하여 정리한 책으로, 筆寫本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인 조선조 예서의 저술 경향은 '가례'를 위주로 하거나 '가례'를 주로 다루고 후반부에 '國恤'과 관련된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방국례'만을 별도로 정리한 예서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가례'와 별도로 '방국례' 전반을 다루어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책의 구성은 '방례'편과 '가례'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방례'편은 총 4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國朝五禮儀』·『國朝續五禮儀』·『國朝五禮儀原續序例』·『文獻備考』의 내용을 五禮의 순서대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鄉禮와 鄉約까지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방례'편의 내용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권 차	분 류	항 목
	目 錄	
권1~3	國朝五禮儀	吉禮
권4~6		嘉禮
권7		賓禮
권8		軍禮
권9~10		凶禮
권11	國朝續五禮儀	吉禮
권12		嘉禮
권13		嘉禮 賓禮 軍禮
권14		凶禮
권15	國朝五禮儀原續序例	嘉禮 軍禮 賓禮 凶禮
권16	國朝五禮儀原續序例	嘉禮, 續序例 軍禮
권17~19	文獻備考	吉禮-禮考
권20~22		吉禮-學校考

권 차	분 류	항 목
권23	文獻備考	吉禮-學校 (太學)
권24		吉禮-書院
권25		嘉禮-禮考 (諸壇上) (前代始朝廟)
권26		凶禮-禮考 (國恤)
권27		賓禮-禮考
권28~30		嘉禮-禮考
권31~33		嘉禮-選舉考 (科制)
권34~35		嘉禮-選舉考
권36~38		嘉禮-儀禮 鄉禮
권39~40		嘉禮-大典 鄉禮 (鄉約)

『全禮類輯』(邦禮)

‘가례’편은 총 38권의 본문 이외에 「全禮類輯圖式」이 별도의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머리에 「凡例」와 「答姜進士(應周)書」가 있고, 말미에 張命相이 지은 「跋文」이 있다. 특이한 점은 序文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姜應周에게 보낸 편지글로써 서문을 대신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가례’편의 내용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권 차	분 류	항 목
	凡 例	
	答姜進士(應周)書	
	目 錄	
권1	通 禮	祠堂
권2~3		班祔
권4		晨謁
권5		時獻
권6		祠堂
권7		深衣制度
권8		附深衣制考
권9		司馬氏居家雜儀
권10		居家雜儀

권 차	분 류	항 목
권11	冠 禮	總論 冠
권12		弁
권13	昏 禮	總論 議昏 納采 納幣
권14		親迎
권15	喪 禮	總論 初終
권16		沐浴, 襲, 奠, 爲位, 飯含
권17		靈座, 魂帛, 銘旌
권18		大斂 成服
권19-23	喪 禮	成服
권24		弔, 奠, 賻
권25		治葬
권26		遷柩, 朝祖, 奠, 賻, 陳器, 祖奠
권27		及墓, 下棺, 祠后土, 題木主, 成墳
권28		虞祭 卒哭
권29		祔
권30		小祥
권31		大祥
권32		禫 補 吉祭
권33		補 改葬
권34		居喪雜儀
권35-36	祭 禮	四時祭
권37		忌日
권38		墓祭
全禮類輯圖式		
	跋	

『全禮類輯』(家禮)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례류집』은 가례와 방국례에 관한 모든 典禮를 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책이다. 계당은 서문을 대신한 「답강진사서」에서 『전례류집』을 편찬한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가 편집한 禮書가 어찌 감히 門戶를 별도로 세우기 위해 옛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구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우리 東方의 선배들이 彼此를 막론하고 禮說을 纂輯한 이들이 많은데, 지금 행하는 여러 책들을 보면 끝내 色目에 치우치거나 지역에 얽매어, 끊임없이 나오는 疑文變節에 대해 會通하여 증거로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몰래 일찍부터 이에 뜻이 있어서 대개 널리 우거진 것들을 모아 『全禮類輯』이라 이름 하였으니, 앞에는 邦禮로 『五禮儀』의 原集 및 續集을 놓고, 다음은 家禮로 通禮와 士相見禮, 鄉射禮, 鄉飲酒禮, 鄉約, 學校를 두었는데, 原綱과 本註·附註·小註는 『心經』의 例를 사용하고 疑變에 대한 문답은 『通鑑』에서 역사를 결단한 例를 사용하여, 그 門類를 나누고 보완하여 한 책을 이루었습니다. 그 篇奏이 너무 많고 名目이 번잡한데, 정력은 따르지 않고 기구도 많이 부족하여 빨리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원근의 諸君들이 함께 서로 도와 1개월여의 공력을 더하여 베끼고 校勘하여 두어 걸음 함께 나갔으나, 겨우 3분의 1을 얻는 공력이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계속하기를 그치지 않고 끝마치기를 기약하였으면,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함에 따라서 방해받기도 하고 게으른 습관에 뜻이 무너지고 책에 가려 버려두기도 하였으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집사의 老成하는 마음으로 공변되고 밝은 좌우의 사람들에게 刪定을 부탁하여, 拱手하고 우러러 완성하여 끝을 낼 수 있었으니, 어떠합니까?4)

4) 『全禮類輯』, 「答姜進士(應周)書」, “鄙所輯禮書, 何敢別立門戶, 求多於古人耶. 但我東先輩無論彼此, 禮說纂輯者, 多矣. 然今世見行諸本, 終是偏於色目, 拘於地方, 而生生不窮之疑文變節, 無以會通參證, 故竊嘗有意於斯, 蓋其纂輯, 名全禮類輯者, 先之以邦禮儀原續, 次以家禮通禮士相見鄉射鄉飲酒鄉約學校, 原綱及本註附註小註, 用心經例, 疑變問答, 用通鑑史斷例, 以其門類彙分採補, 自成一表, 而篇奏浩穰, 名目繁密, 精力不逮, 器具多艱, 未可猝然以了斷也. 客冬遠近諸君, 合同助發相守, 爲一朔之功, 而寫過校勘, 兩道俱臻, 僅得三分一功力矣. 若因此而接續不已, 出未可期, 而其於私穴世, 故隨處妨奪, 頽志懶習, 掩卷忘置, 謂之何哉. 如得執事老成之心, 公眼明奉之左右, 託以刪正, 庶乎其拱手仰成而未由焉, 奈何.”

이를 보면, 지금까지의 禮說이나 禮書가 學派나 黨派에 치우쳐 있는 점이 많아서, 특히 變禮의 경우에 어떠한 것이 예의 본원에 합당한 것인지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여러 예설을 會通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전례류집』을 편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전례류집』은 조선조의 예설을 망라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예서이다. 이에 계당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모두 정리할 수 없어서, 많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 내용에서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를 구분하지 않고 조선조 예학자들의 예설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예설이나 견해는 덧붙이지 않고 다양한 예설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어서, 보는 이들이 스스로 합당한 예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에는 계당 자신의 견해가 들어 있지 않아서, 이 책만을 가지고 계당의 예학적 입장을 고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책은 조선조 예설의 흐름과 견해의 차이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계당은 이 책의 「범례」에서 이 책의 편집 원칙에 대해 적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례류집』이 지닌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범례」의 畧文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책의 편집은 『家禮』를 綱으로 하고, 經傳과 子集 및 諸儒들의 설 가운데 본 뜻과 관련 있는 것들을 아울러 採錄하였으며, 분류에 따라 견해를 덧붙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1. 매 조항마다 『가례』의 본문을 모두 行書하고, 本註는 본주라고 쓰고, 附註는 부주라고 쓰며, 여러 설들을 채록한 것은 新增이라고 써서 구별하였다.
1. 『가례』 본문 이외에 朱子의 설들이 『大全』이나 『語類』에 나오는 것과 친구나 문인에게 답한 글들은 新增의 아래에 아울러 기록하였다.
1. 『가례』의 본문에서는 常禮만을 말하고 變禮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았으므로, 의심나는 글이나 변례의 절차에 대하여 여러 설들에 나오는 것은, 일

에 따라서 採錄하여 널리 참고하도록 하였다.

1. 하나의 일에 여러 설이 함께 나오는 것도 아울러 기록하였으니, 禮를 아는 이가 나와서 바르게 하기를 기다린다.
1. 본문 외에 조항을 따라서 添入한 것은 각 조항의 위에 '補'자를 써서 구별하였다.
1. 先儒들의 설 중에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일에 따라 채입하여 중복되는 것을 피하지 않았으나, 혹은 節略하기도 하고 혹 하나의 설이 여러 일에 미치는 것은 각 조항마다 나누어 썼다.
1. '改葬'과 '合葬'의 吉祭 儀禮는 『가례』에는 실려 있지 않은 까닭에, 『丘儀』와 『備要』 등에 나오는 여러 설을 채록하여 보충하였다.
1. 國恤禮는 邦禮에 산입하였으나, 儀節 가운데 臣民과 관련되는 것은 가례의 아래에 아울러 덧붙였다.
1. 선유들이 問答한 설을 인용할 때에는 혹은 號를 쓰기도 하고 혹은 德을 쓰기도 하여, 모두 本書에서 서로 처한 의리에 따랐다.
1. 服制의 여러 조항들 중 『가례』에 있지 않고 『備要』와 『便覽』 등의 책들에 나오는 것은, '補'자를 아울러 써서 『가례』의 본문과 구별하였다.
1. 선유들의 설을 인용하면서 혹 先後의 차례를 잃는 것을 면치 못한 것은, 각각 文勢의 緊慢과 輕重에 따른 것이니, 읽는 이들의 용서를 구한다.
1. '諸具'의 조항은 『구의』와 『비요』, 『편람』을 아울러 합하여 각 장의 아래에 덧붙여 기록하였다.
1. 『儀禮』 첫 머리인 「土冠禮」의 예에 의거하여, '가례'를 內篇으로 하고 '방례'를 外篇으로 한다.
1. 邦禮는 『의례』의 본문을 綱으로 삼고 아울러 『五禮儀』와 『文獻備考』·『磻溪隨錄』 및 諸家의 설을 인용하여, 風俗의 教化와 연관된 것을 취하여 門類를 나누어 풀어 썼는데, 見識이 있고 이에 힘쓰는 자가 참고하기를 기다린다.⁵⁾

5) 一. 此書編輯以家禮爲綱, 而經傳子集及諸儒說有關本義者, 并爲採錄, 隨類附見, 以備參攷.

一. 每條極行書家禮本文, 本註則書本註, 附註則書附註, 採入諸說書新增, 以別之.

一. 家禮本文外, 先生說出於大全語類, 及知舊門人答書者, 并錄于新增下.

一. 家禮本文, 語常而未及於變, 疑文變節之, 出於諸說者, 隨事採錄, 以備博考.

一. 一事而諸說互出者, 并錄之, 以俟知禮者取正.

‘가례’편의 내용은 『朱子家禮』를 기준으로 각종 예서와 예설들을 모두 모아 놓았으며, 『가례』 이외에도 『朱子大全』이나 『朱子語類』에 나오는 설들도 모두 採錄하여, 주자의 예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례』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明나라 丘濬이 지은 『家禮儀節』에 의거하고 『喪禮備要』 등 여러 예서에 나오는 예설들을 가지고 보충하고 있다.

‘방례’편은 『국조오례의』와 『문헌비고』 등에 나오는 설을 모두 정리하여, 주로 風俗의 教化에 주안점을 두고 본서를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전례류집』의 편집 원칙을 통해 볼 때, 이 책은 단순히 이전 禮家의 예설을 모아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서로 다른 예설들을 종합 정리함으로써 儀禮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變禮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계당은 다양한 예설들을 모두 참고하여 정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례의 시행과 확립을 추구하였다고 하겠다.

-
- 一. 本文外逐條添入者, 每條上書補字以別之.
 - 一. 先儒說有關於本文者, 隨事採入, 不避重複, 而或節略之, 或一說而傍及數事者, 分書于各條.
 - 一. 改葬合葬吉祭儀, 家禮不載, 故并採丘儀備要諸說補入.
 - 一. 國恤禮入於邦禮, 而儀節之係於臣民者, 并附於家禮之下.
 - 一. 引用先儒問答說, 或書標號, 或書表德, 皆因本書相處之義.
 - 一. 服制諸條之不在家禮, 而出於備要便覽等書者, 并書補字, 以別於家禮本文.
 - 一. 先儒說引用, 或不免先後失次者, 各因文勢之緊慢輕重, 覽者恕之.
 - 一. 諸具條, 并合丘儀備要便覽, 所錄以附于各章之下.
 - 一. 依儀禮首士冠禮例, 以家禮爲內篇, 以邦禮爲外篇.
 - 一. 邦禮以儀禮本文爲綱, 并引五禮儀文獻備考 磻溪隨錄及諸家說, 取其有關於風化者, 分門類釋, 以待識務者, 參攷.

4. 계당의 禮說⁶⁾

조선조의 예학사상은 일반적으로 朱子の 『家禮』 및 주자의 예설을 기준으로 하고, 『儀禮』, 『禮記』 등의 古禮를 통해 그 근원을 소급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에서도 『가례』의 규정에 충실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가례』보다는 고례에 치중하여 예설을 전개하는가 하는 차이점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체로 『가례』와 고례를 통해 의례 시행의 합리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은 대부분의 예학자들이 지닌 공통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당 역시 『가례』와 주자의 예설을 기준으로 예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계당은 '服이 있어서 제례를 직접 주관할 수 없을 경우에 누구에게 제사를 대행하게 해야 하는가'에 하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기제는 喪禮의 연장인데, 情理상 참여하여 행할 수 없다면 어떠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어떤 이가 '孫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자 주자가 좋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子弟가 대행하는 것이다. 葛庵이 말하기를, "先賢이 논한 바가 이와 같으니, 代行하는 것이 예의 뜻에 합치하는 것일 따름이다"라 하였다. 지금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舍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부득이할 것이다.⁷⁾
- ② 주자가 范伯崇에게 답하기를, "卒哭 후의 四時 節祀에 墨纒으로써 친히 올린 다"는 글이 있으며, 先儒들은 "우리나라에는 목축의 제도가 없으므로, 제

6) 溪堂의 禮說에 대해서는 『文集』의 雜著와 편지글을 통해 분석하였다. 계당의 예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집』의 권11에 실려 있는 「祭問」이라는 雜著가 계당의 글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이를 밝혀두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醇庵 吳載純(1727~1792)의 『醇庵集』(1808년 간행) 권9에 실려 있는 「祭問」이라는 同名의 雜著와 몇 글자를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祭問」이라는 글은 계당이 참고하고자 필사해 둔 것을 후학들이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계당의 저술로 誤認하고 문집에 수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7) 『溪堂先生文集』, 권3, 書, 「答洪聖中(運植)問目」, "問忌者喪之餘, 不得參行於情理, 何如. 朱子答或問以孫行之得. 然則以子弟代行耶. 葛庵曰, 先賢所論如此, 代行合禮意耳. 今以爲準, 使令胤代行, 恐不得不然."

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喪中인데 獨身으로 형제나 자손이 없으면, 마땅히 白笠과 緇布, 纁巾, 直領으로서 행하고, 일을 따라서 다시 최복을 입는 것이 예의에 합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一家의 傍親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欠缺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四時의 질사는 오히려 친히 행해도 되는데, 하물며 기제는 곧 喪禮의 연장임에랴!⁸⁾

인용문 ①은 최복을 입게 되어 기제사를 직접 모실 수 없을 경우에 기제사는 방친이 아니라 자식이 대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용문 ②는 만약 자식이 없을 경우에도 방친이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계당은 변례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주자의 예설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부모의 喪中에 仲父의 상을 또 당하였을 경우에, 부모상의 祥祭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계당은 『예기』의 내용을 통해 이를 해석하고 있다.

『예기』, 『雜記』의 “父母의 喪 중에 형제가 죽으면 먼저 殯하고 제사지낸다. 만일 같은 집에 산다면 비록 臣妾이라 하더라도 장례지낸 후에 제사지낸다”는 문장의 註에서 “제사란 練祭와 祥祭를 말한다”고 하였고, 疏에서 “형제가 죽으면 이미 빈하고 제사지낸다는 것은, 형제의 喪이 가볍기 때문에 빈한 후에 吉祭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집에 사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다. 만약 같은 집에 산다면 비록 신첩과 같은 가볍고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도 오히려 장례를 치른 후에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이는 吉凶이 서로 범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지금 보내온 글에서 이미 各戶라고 하였으니, 각호라면 다른 집에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大小家를 모두 같은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이다. 다만 臨祭하고 致祭하는 날에 새롭게 상을 당한 집안과 서로 왕래하거나 器物을 혼용해서는 안 될 것

8) 『溪堂先生文集』, 권4, 書, 「答宋公華問目」, “朱子答范伯崇, 有卒哭後四時節薦墨紼親奠之文, 先儒以爲我國無墨紼之制, 如主祭之人在喪而獨身無兄弟子孫, 則當以白笠緇布纁巾直領行之, 率事反服衰, 似合禮義云云, 是蓋出於以一家傍親代行事, 極欠缺故耶. 且四時節祀, 猶可親行, 況是喪之餘乎.”

이니,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⁹⁾

계당은 이에서 『예기』, 「잡기」편의 내용을 근거로, 서로 다른 집에 사는 경우라면 祥祭는 거행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질문한 이의 집안에서는 ‘同宮’에 대해 대소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상제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계당은 서로 다른 집에 산다면 ‘동궁’이 아니라 ‘異宮’에 해당되므로 상제를 지내는 것이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사를 지낼 때는 서로 왕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吉凶이 서로 간섭할 수 없다’¹⁰⁾는 고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主婦와 主喪의 어머니 및 祖母가 함께 살아있을 경우에 누가 주부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모와 어머니는 마땅히 본래의 복으로 복을 입을 뿐이다. 喪內의 주부는 조모가 해당하고, 장례 후에 제사를 지낼 때의 주부는 喪主의 처가 된다는 것이 명문에 있다”¹¹⁾고 하여, 의례의 시행에서 고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례에 明文이 없을 경우에도, 臆見으로 의례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問〕 主婦가 병으로 제사를 돕지 못한다면, 주부의 며느리가 대신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答〕 주부가 병이 들었다고 하여 그 며느리가 대행한다는 것은 禮書에서 보

9) 『溪堂先生文集』, 권4, 書, 「答權用卿(在默)問目」, “雜記, 父母之喪昆弟死, 既殯而祭, 如同宮則雖臣妾葬而後祭, 註將祭謂練祥也, 疏昆弟死既殯而祭者, 兄弟輕故殯後便可行吉祭謂異宮者耳. 若同宮雖臣妾之輕卑, 猶待葬後乃行父母祭, 以吉凶不相干故也. 今來示既曰各戶, 則各戶非異宮耶. 大小家之不可不謂之同宮, 而似不可如禮行祀云者, 恐失之耳. 但臨祭致祭之日, 不可與新喪家相往來混器用, 此似已良遂耳.”

10) 『禮記』, 「喪服四制」, “夫禮, 吉凶異道, 不得相干.”

11) 『溪堂先生文集』, 권5, 書, 「答金敬輿(尙欽)問目」, “祖母與母, 當以本服服之而已, 喪內主婦則祖母當之, 葬後祭奠主婦則喪主之妻爲之, 有明文耳.”

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명을 내리지 못하겠다.¹²⁾

[問] 제사를 주관할 자가 喪中에 있으면 先代의 祭禮는 격식을 갖추 수가 없으니, 다만 祝文이 없이 單獻으로 지내면서 神主를 내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未安할 것 같습니다. 만약 紙榜으로써 設行한다면 애통함을 드러내는 儀節이 또한 예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答] 지방으로써 애통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로부터 근거가 없으며, 지금도 또한 행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아마도 臆見으로 대답하지 못하겠다.¹³⁾

위의 인용문들은 禮書에 규정되지 않은 의례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처럼 계당은 의례의 시행과정에서 가급적 古禮의 규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며, 마음대로 예법을 해석하여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계당은 변례의 상황에서 고례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는 先儒들의 설을 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退溪의 예론에 입각하여 이를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祖妣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先考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비에 대한 承重과 服制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계당은 퇴계의 예설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질문해 온 變禮의 절차는 古속에 이러한 경우가 많았는데, 代服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先儒들의 의론이 서로 다른 곳이 있다. 그러나 퇴계선생의 定論을 師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내 대복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복을 하는 것이 바르고 穩當할 것이니, 어떠한가. 그 아버이를 차마 죽었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진실로 자식된 情理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3년상에 정해

12) 『溪堂先生文集』, 권3, 書, 「答洪聖中(運植)問目」, “[問] 主婦病不助祭, 則主婦之婦代之, 如何. / [答] 主婦病而其婦代行, 不見於禮書, 恐不可諭命耳.”
 13) 『溪堂先生文集』, 권4, 書, 「答宋公華問目」, “[問] 主祭者在喪中, 而先代祭禮不可具式, 祇以無祝單獻, 則出主行祀, 似未安, 若以紙牌設行, 則舉哀之節, 亦不悖於禮乎. / [答] 紙牌舉哀, 古無據, 今又不見行, 恐未可臆對耳.”

진 主喪이 없게 된다면 情과 禮에 편안하겠는가. 아버지가 없는데 長孫이 다만 본래의 상복인 菴服으로 일을 치르면 이는 衆孫들과 같게 되니, 어찌 가히 嫡長孫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成服의 절차를 두 빈소에 고하고 복을 입어야 할 것이다. 孝孫·孤哀孫에 대해서는 바로 효손이라 칭하는 것은 미안하므로 마땅히 고애손이라 칭하여야 할 것 같으니, 어떠한가.¹⁴⁾

조비의 상을 당한 후에 다시 선고의 상을 당했을 경우, 조비의 상에 대해 승중하여 代服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유들의 설이 일치하지 않지만, 계당은 퇴계의 정론에 따라서 승중하여 대복하는 것이 禮法과 情理에 모두 합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조비의 축문에서는 곧바로 ‘孝孫’이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孤哀孫’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계당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廬墓 제도에 대해서도, 퇴계의 설을 따라서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問] 胡伯量的 ‘장례를 치른 후 廬墓에 거할 때에 대한 問目’ 중에, 李敬子は “主喪者는 마땅히 집에 거하며 때마다 한 번씩 살핀다”고 하였고, 王舜叟는 “려묘의 절차는 聖人の 제도에 맞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니, 백량이 이 두 설을 듣고 처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아우 한 두 사람으로 하여금 墳庵에 거처하게 하였다. 주자는 “무덤의 흙이 마르지 않았으니 때마다 한 번씩 살피는 것이, 어찌 일을 해치는 것이겠는가. 다만 려묘라는 명칭은 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지금의 효자들이 려묘하는 것은 과연 古禮에 합당하지 않은데, 주자가 이와 같이 단안한 뜻을 끝내 깨닫지 못하였으니, 만일 달리 上考하고 증명하여 따를만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아끼지 말고 어리석고 의혹됨을 깨트려 주심이 어떠하겠는가.

14) 『溪堂先生文集』, 권6, 書, 「答李範五(柄蓋)問目」, “俯詢變節, 古今多此類, 故以代服不代服, 先儒議論, 互有不同處, 然退陶老先生定論爲可師法矣. 終是不代服不如代服之爲正且穩, 如何. 不忍死其親, 誠爲人子情理之所不可已, 然三年喪無定主, 於情禮安乎, 父不在而長孫只以本服菴將事, 是與衆孫同也, 烏可曰嫡長孫耶. 其成服之節, 告于兩殯而受服, 孝孤哀云云, 直稱孝未安, 似當稱孤哀孫, 如何.”

[答] 퇴계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은 反魂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또 장례를 치르는 날 封墳이 완성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虞祭를 지내는 것은, 그 평시에 거처하던 安樂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神魂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廬墓의 풍속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예법은 마침내 없어지고, 아무도 없는 황폐하고 후미진 산에서 魂魄을 받들고 있으니 이는 평시에 안락하게 거처하던 곳이 아니다. 3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體魄을 중히 여기고 神魂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알지도 못하고 상고하지도 않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였고, 또 말씀하시기를 “漢唐 이래로 居廬한다는 명칭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혹 려묘하는 자에게는 旌閭를 세워 표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려묘의 풍속이 생겨나고 반혼의 예가 마침내 없어졌으니, 매우 탄식할 일이다. 다만 末世에 예법이 무너져서 집으로 反혼하고서도 행동을 삼가지 않는 일이 많이 있으니, 도리어 려묘하여 혼잡함을 피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삼가지 않는 자라면, 비록 려묘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려묘에서도 공경하고 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옛날의 려묘는 反혼을 하지 않고서 여전히 묘소에서 받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魂을 받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애초에 反혼하지 않았다면 묘소에 거하며 받드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지만, 선유들은 오히려 이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신을 받들어 室堂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침저녁으로 神魂이 있는 곳에서 받들어 모시지 않고 반드시 텅 빈 산의 體魄만이 있는 땅만을 받드는 것은, 輕重의 의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李敬子和 王舜弼의 말은 이러한 점에서 나왔으며, 주자가 단안한 뜻도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다.¹⁵⁾

15) 『溪堂先生文集』, 권7, 書, 「答族兄釋孝」, “[問] 胡伯量營葬後居廬時間目中, 李敬子以爲主喪者當居家, 時一展省, 王舜弼云, 廬墓一節, 不合聖人之制, 切不須爲之, 伯量既聞二說, 不遂初意, 使一二弟居墳庵, 朱子曰, 墳土未乾, 時一展省, 何害於事, 但不須立廬墓. 以此推之, 則今世孝子之居廬, 果不合於古禮, 而朱夫子如是斷案之意, 終未曉得, 如有從佗可考明證處, 勿靳指示以破愚惑, 如何. / [答] 老先生曰, 古人深以反魂爲重, 且葬之日, 未及成墳而反虞, 所以欲反其平時所居處所安樂之處, 庶幾神魂不至於飄散也, 自廬墓俗興, 此禮遂廢, 仍奉魂魄於空山荒僻, 平昔所未嘗居處安樂之地, 以歷三年而後反之, 重體魄而輕神魂, 其不知而無稽也甚矣. 又曰, 漢唐以下, 未有居廬之名, 其中或有廬墓者, 表旌其閭, 由是廬墓成俗, 反魂之禮遂廢, 甚可歎也. 但末世禮法壞亂, 反魂于家者, 多有不謹之事, 反不若廬墓之免於混雜也, 然其不謹如此者, 名雖廬墓, 恐亦不能敬謹於廬墓也

장례를 치른 후에 반혼을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神魂을 평소에 거처 하던 곳에서 편안히 모시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옛날의 려묘 제도는 반혼하지 않고 묘소에서 받드는 것이었는데, 반혼을 하고서도 려묘하는 것은 반혼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禮節을 중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에서 행하고 있는 려묘의 제도는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고례에 입각하여 선유의 설을 따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스승에 대한 服制에 대해서도 계당은 선유들의 설을 근거로, 정해진 복제는 없고 恩惠에 따라 달리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師道, 師服 등에 대해서, 張載는 “그의 선함을 보고 자신이 본받으니, 곧 이것이 스승이다. 그러므로 그 한마디 말이나 하나의 義理를 얻는 것이 朋友와 같은 자도 있고, 친함이 兄弟와 같은 자도 있고, 자신의 공을 성취하게 한 은혜가 天地나 父母와 같은 자도 있으니, 어찌 하나의 복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 하였고, 程子是 “顔子와 閔子騫은 공자에 대하여 자신을 이루어준 공이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으므로 비록 斬衰三年이라도 옳거니와, 그 다음은 각각 情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저울질할 뿐이니, 어찌 하나의 복제만이 있겠는가!”라 하였다. 대개 스승의 도는 높음이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기도 하고 봉우와 같기도 한 것이니, 서로 統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善함을 보고서 이를 본받는다고 말한 것은, 서로 보고서 선해지려는 종류가 아니겠는가. 五倫의 朋友有信은 사람들과 더불어 선해지려는 것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단지 지금처럼 나이를 따져서 서로 대답하는 봉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명확하니, 선유들이 말한 스승의 도리가 그 가운데 포함된다면 것이 옳지 않겠는가. 선유들이 스승에 대해 입은 복제와 이에 대해 논의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그 설을 모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개 두 선생의 말이 ‘어찌 하나의 복제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제현(諸

云云. 以此推之, 古昔廬墓, 不爲反魂而仍奉於墓所, 可見矣. 今則奉魂而反于家矣, 初不反魂則仍奉而居之于墓所, 容有說也, 而先儒猶不許之, 則乃於神反室堂之後, 不爲晨昏奉侍於神魂所在之處, 而必於空山體魄之地者, 以不知重輕之義故耳, 敬子舜弢之言, 出於此, 而朱夫子斷案之意, 亦如是而已耶.”

賢)들이 각각 心喪의 복을 입은 것은 恩義의 알고 깊음에 따라 올 뿐임을 알 수 있다.¹⁶⁾

스승에 대한 복제에 대하여 古禮에 明文이 없는 것은, 스승에 대한 恩義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계당은 선유들도 은혜에 따라 스승에 대해 상복을 입는 예가 달랐음을 구체적으로 揭示하고 있다.¹⁷⁾ 이처럼 스승에 대해서는 은의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心喪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계당은 禮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人情을 따라서 예를 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問] 喪中에는 이미 禫祭를 지낼 수 없으니, 禫月 전의 朔望에도 또한 신주를 내어 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러 조항은 모두 저희 집안에서 일찍이 지내오던 것인데 산만하여 기록을 얻지도 못하고 또한 경솔한 뜻으로 망령되게 행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히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答] 대상을 마치고 祔廟하는 것은 담제 전에는 哀慟함이 남아 있으므로 오히려 다할 수가 없다. 담제는 吉祭이므로 상중에 행할 수가 없는데, 이른바 凶時에 길례를 차마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朔望의 殷奠과 같은

16) 『溪堂先生文集』, 권7, 書, 「答族兄釋孝」, “師道師服云云, 張子曰, 見彼之善而已效之, 便是師也, 故有得其一言一義如朋友者, 有親炙而知兄弟者, 有成就已功而恩如天地父母者, 豈可一槩服之. 程子曰, 顏閔之於孔子, 其成己之功, 如君父並, 雖斬衰三年可也, 其次各有淺深稱其情而已, 豈可一槩制服. 蓋師道尊並君父而朋友齊等也, 似不相統合. 然見其善而效之云者, 非其相觀而善者類耶, 五倫之朋友有信, 是與人爲善, 通稱之名, 非但指如今世計年甲相然諾之朋友也明矣, 則先儒之云師道之包在於其中者, 其以是否. 先儒之服師服論師服處甚多, 有不可盡將說去, 大槩以兩夫子之言豈可一槩制服推之, 可見諸賢各服心喪者, 自有恩義淺深之所在耳.”

17) 『溪堂先生文集』, 권7, 書, 「答族兄釋孝」, “黃勉齋爲朱子加麻心喪三年, 吉治隱爲權陽村加麻心喪三年, 李土亭爲其兄加麻心喪三年, 崔楊浦爲其兄加麻心喪三年, 林滄溪爲朴玄石加麻心喪暮年, 金沙溪爲李栗谷加麻心喪九月, 尹魯西爲金愼獨齋加麻心喪五月, 加麻心喪三月不可盡錄.”

예는 또한 줄여서 행할 수 없는데, 生前에 모시던 義理로 보면 지금은 남은 슬픔이 다하지 않았으니, 담제 전에는 폐하였다가 다른 날에 이를 행하게 되면, 예법을 크게 위배하는데 이르지 않는 것이다.¹⁸⁾

喪中에는 禫祭를 지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朔望의 제례도 지낼 수 없으니,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잠시 폐하였다가 다른 날에 지내는 것이 인정상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外祖母를 잇는 상복을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本生으로 외조모를 잇는 복은 先儒들이 설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는 본례情에 기인하므로 복을 입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¹⁹⁾라고 하여, 情理에 따라 복을 입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은 ‘예는 정에 근본한다’고 하는 예의 기본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견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계당은 예설의 전개에서 古禮와 朱子の 예설을 행례의 기준으로 삼아 선유들의 설을 따르고 있으며, 예의 본원적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따르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5. 맺음말

계당 류주목의 학문은 ‘博文約禮’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계당은 ‘敬’을 학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고 보았으며, 경 공부는 『소학』의 실천

18) 『溪堂先生文集』, 권4, 書, 「答康戚(孝植)問目」, “〔問〕喪中既無禫, 則禫月前朔望, 亦難出主行奠, 此數條, 皆鄙家會所經歷者, 而漫不記得, 又不敢率意妄行, 詳細回教如何. / 〔答〕終祥附廟, 而禫前餘哀猶未盡也. 禫是吉祭, 喪中不可行, 所謂不忍於凶時行吉禮也. 至如朔望殷奠, 而亦無參降, 以見生前常侍之義, 則今於餘哀未盡, 禫前仍廢之, 日存此行之, 不至大違禮法否.”

19) 『溪堂先生文集』, 권5, 書, 「答金敬興(尙欽)問目」, “本生繼外祖母服, 先儒說無之, 然禮本因情而制服之, 似無妨.”

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소학』을 중시하였다. 이처럼 계당의 학문은 敬의 실천을 기본정신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학과 관련하여 계당은 조선조의 예설을 망라한 예서인 『全禮類輯』을 편집하였는데, 이는 黨派와 黨色을 구분하지 않고 조선조 예학자들의 예설을 망라하여 정리한 책이다. 특히 계당은 이에서 자신의 예설이나 견해를 덧붙이지 않고 다양한 예설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하여, 조선조 예설의 흐름과 견해의 차이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설의 전개에서 계당은 『家禮』 및 주자의 예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古禮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고례에 明文이 없을 경우에도 臆見으로 의례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의례의 시행과정에서 가급적 古禮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예법을 고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례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는 先儒들의 설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특히 退溪의 예설을 주로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世俗에서 행하고 있는 廬墓의 제도도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禮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人情을 따라 예를 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계당의 예학사상은 고례와 『가례』를 위주로 하면서도, 儀禮의 行禮 과정에서 예의 본원적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에 따라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례의 실천을 추구했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禮記』, 학민문화사 영인본.

『儀禮』, 학민문화사 영인본.

『朱子家禮』(『性理大全』所收); 朱熹, 임민혁 옮김, 『朱子家禮』, 예문서원, 1999.

『溪堂全書』上中下,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高英津, 『朝鮮中期 禮學思想史』, 한길사, 1995.

都民宰, 『朝鮮前期 禮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鄭景姬, 『朝鮮前期 禮制·禮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Abstract

Gyedang Ryu-Joomok's Li-thought(Studies of Rite)

Doh, Min-Jae

This thesis studied the Li-thought of Gyedang Ryu-Joomok(溪堂 柳疇睦, 1813~1872), who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figures of the Youngnam School in the 19th century.

The characteristic of his scholarship is 'BakMunYakRye(博文約禮; Have broad knowledge and act according to the courtesy)'. Gyedang thought of 'Jing(敬; Respect)' as the most important secret of scholarship; he valued much of 『SoHak(小學; A book written by Zhu Xi)』, saying such studies of 'Jing' could be carried out through practical learning from it.

Gyedang made up the book of 『JeonRyeYooJip(全禮類輯)』, which is a courtesy book that covers all the courtesy dogmas of courtesy scholars from the Chosun Dynasty without distinguishing the schools and colors of the parties. He arranged different dogmas in an objective position without adding his own dogmas or views and made it possible to illuminate objectively the flow and difference in views from the courtesy dogmas of the Chosun Dynasty.

In the development of courtesy dogmas, he set 『Zhuzijiali(朱子家禮; The book of the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written by Sung)』 and his dogmas as the standard and was in the position of observing the old manners. Also, he stood in a position that one should not get doxa even if there was no specific provision in the old manners, observe the rules in them if possible during the procedure of conducting courtesy, and not try to correct the courtesy laws on his own. He insisted on following the dogmas of old scholars if it was hard to find the grounds and followed the dogmas of Toegye Lee-Hwang. To some degree that did not violate the courtesy laws, he acknowledged carrying out courtesy according to humanity.

In this manner, the Li-thought of Gyedang focused on the old manners and 『Zhuzijiali(朱子家禮)』, yet stood in the position that the procedure of carrying out the courtesy could be done following humanity within the range that did not harm its courtesy-originated meaning.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pursued a rational practice of courtesy.

Key Word

Gyedang Ryu-Joomok(溪堂 柳疇睦), Li-thought(Studies of Rite), 『JeonRyeYooJip(全禮類輯)』, BakMunYakRye(博文約禮), old manners(古禮), humanity

- 논문투고일 : 2008.11.15. 심사시작일 : 2008.11.20. 심사완료일 : 2008.11.28.